

2026년 세종학당재단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세종학당재단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여 아래와 같이 직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세종학당재단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해외 한국어교육 통합 브랜드 '세종학당'을 지정·지원하고 세종학당을 통한 문화 교육 홍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어기본법 제19조의2』에 의해 2012년 10월 24일 설립된 공공기관임

2026년 5월 22일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1. 채용 분야 및 담당 직무

구분	채용분야	직급	채용인원	담당 직무
체험형 청년인턴	청년인턴	청년인턴	6명	○ 재단 경영 및 사업 행정업무 지원

- 직무 세부사항은 직무기술서 참조
- 같은 시기에 진행 중인 채용에 대한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중복지원 시 일괄 불합격 처리
- 채용전형은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진행
- 지원서 작성 시 본인 해당사항을 체크·입력한 내용에 한하여 가점 및 동점자 처리에 적용, 본인 선택 또는 단순 입력누락 등 사유로 인한 미입력 정보에 대해서는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용 불가
- 채용분야 구분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한 임용자의 경우 재단 인력 운영 계획 등에 따라 채용분야와 달리 순환배치 할 수 있음

2. 응시자격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응시자격에 해당하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접수마감일 기준)

구분	응시자격 기준
지원자격	· 임용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2조 의거)에 해당하고 세종학당재단 청년인턴 무경험자 ·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한 사람 · 재단 인사규정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채용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사람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채용구비서류가 거짓이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적용하여 해당 대상 포함 ①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3. 가점사항

□ 가점사항: 입력자에 한하여 가점부여, 향후 증빙검증 절차에 따라 처리

구 분		내 용	가 점
사회형평	보훈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 발급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상 기재된 가산을 확인 후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가점합격인원 상한제를 적용하여 운영(각 전형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모집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이거나 제한경쟁 채용 분야에 지원한 경우에만 가점 부여	관련법에 의거 만점의 10% 또는 5%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 장애인	서류심사 시 3점
	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서류심사 시 2점
	북한 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 2급 이상	서류심사 시 1점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가점은 중복 적용되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가점합격인원 상한제를 적용하여 운영함.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 적용은 [붙임6]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세부기준을 따름

** 자격증 및 증명서는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보훈 이외의 사회형평 가점은 중복 시 유리한 것 1개만 반영

4. 근무 조건

가. 근무지: 세종학당재단(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51)

나.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주 40시간)

다. 근무기간

구분	근로계약기간
체험형 청년인턴	○ 근로계약 체결일 ~ 2026. 12. 31.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라. 보수

구분	월 급여액	비고
체험형 청년인턴	2,160천원/월	○ 2026년 최저임금 반영 ○ 체험형 청년인턴이 계약기간 만료 후 또는 재직 중(60일 이상) 재단 신입직원 공개채용 응시 시 1회에 한해 서류심사 면제

마. 평가

평가 방법 및 기준	
(평가방법) 소속 팀장, 담당 멘토 및 인사위원회 평가 (근무기간 내 1회 실시) (평가기준)	
구분	기준
부서 평가(50%)	기획력, 의사전달력, 신속성, 팀워크, 성실성 등 근무 전반 평가
인사위원회 평가(50%)	조직기여도, 발전가능성, 적극성 등 인성 및 역량 요소 평가
※ 평가 우수자(평정 평균점수 90점 이상자)에게 기관장 명의 우수인턴 추천서 발급	

5. 채용 절차

구분	내용					
1차 서류심사	· (심사방법) 결격사유, 부적격자 제외 → 평가표에 따른 정량·정성 점수 평가, 가점 평정 → 서류합격 예정자 대상 증빙서류 검증					
	· (선발인원) 채용 예정인원 3배수					
	※ 심사위원 평균 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 동점자 발생 시 재단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세부기준</th></tr> <tr> <td>계량(15%)</td><td>교육(15%)</td></tr> <tr> <td>비계량(85%)</td><td>경력/경험(25%) 자기소개서(60%)</td></tr> </table>	구분	세부기준	계량(15%)	교육(15%)	비계량(85%)
구분	세부기준					
계량(15%)	교육(15%)					
비계량(85%)	경력/경험(25%) 자기소개서(60%)					
2차 최종면접	· (심사방법) 1대다 면접(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 성실성 등의 인성 및 역량 요소 평가) · (선발인원) 채용 예정인원 ※ 심사위원 평균 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 동점자 발생 시 재단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					

세종학당재단 채용 관리 지침 제13조(동점자 처리)

- ① 각 전형단계에서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 인재에 해당하는 사람
 4. 직전 전형 단계 고득점자
- ② 제1항의 동점자 처리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각 전형별 선발 배수를 초과하더라도 모두 합격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최종합격자 결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채용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채용 공고	5. 22.(금) ~ 6. 8.(월)	· 재단·알리오·문체부·나라일터 등
지원서 접수	5. 22.(금) ~ 6. 8.(월) 17:00	· 채용사이트 통해 접수
서류심사	6. 9.(화) ~ 6. 11.(목)	
서류합격예정자 증빙 제출	6. 12.(금) ~ 6. 16.(화) 17:00	· 서류 합격 예정자 개별 통보
제출 증빙 진위 확인	6. 17.(수) ~ 6. 22.(월)	· 관계기관 진위 확인
서류심사 결과 발표	6. 23.(화)	· 채용사이트 통해 발표
최종면접	6. 25.(목)	· 대상자 개별 안내
최종합격자 발표	6. 26.(금)	· 채용사이트 통해 발표
최종합격자 임용 서류 제출	6. 26.(금) ~ 6. 30.(화)	· 결격사유 등 확인
최종임용	7. 1.(수)(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통보

7. 지원서 접수

가. 공고일: 2026. 5. 22.(금)

나. 접수기간: **2026. 5. 22.(금) ~ 6. 8.(월) 17:00까지**

다. 접수처: 온라인 채용 접수사이트(<https://ksif.fairyhr.com>)

- 입사지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원

* 온라인 접수만 인정하고, 이메일·전자우편·우편·방문접수 불가

** 접수마감 시간이 임박하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접수할 것, 해당 사유로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재단은 책임을 지지 않음

8. 증빙서류 제출

가. 제출대상: 서류심사 합격 예정자

* 서류심사 합격 예정자에게 증빙서류 제출 개별 통보

나. 제출기간: 2026. 6. 12.(금) ~ 6. 16.(화) 17:00까지

다. 제출방법: 아래 해당하는 증빙서류 스캔 후 기한 내 채용사이트에 제출,
제출 시 **[붙임4]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참고**

*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 **문서진위 확인을 위하여 문서확인번호 등의 사항은 그대로 제출**

제출서류	제출대상	유효기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 한국사시험 입력자	공고일 이전
학교성적증명서 - 이수학점 명시	· 학교교육 입력자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이수학점, 시간 확인 불가할 경우 미인정 * 해외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의 경우 기한 없음
직업교육 수료증 - 이수시간 명시	· 직업교육 입력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보훈 대상자	공고일 이후 발급분
국가보훈등록증		기한 없음
장애인 증명서 - 중증장애인의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	· 장애인 대상자	공고일 이후 발급분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기본증명서(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 이전 국적 표기) - 부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등)	· 다문화가족 대상자	
학사까지의 최종학력 기준 재학, 졸업 증명서 등	·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상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기준은 [붙임7] 비수도권 지역인재 범위를 따름 * 가점사항은 아니나 동점자 발생 시 적용을 위해 수집	

라. 증빙검증 방법: 아래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여 **서류심사 최종점수가 변동 되는 경우 탈락 처리하고**, 차순위자 증빙 확인 후 서류 합격자 선정

- 제출한 증빙이 유효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증빙서류에 입력한 정보의 식별이 불가하거나 제출 기간 내 미제출한 경우
- 증빙 발급 유효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증빙의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서류심사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은 수준의 단순오입력을 제외하고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정보와 제출한 증빙이 다른 경우

※ 증빙 제출사항(붙임4)을 준수하지 않아 탈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증빙서류는 진위여부 및 입사지원서와의 일치여부만 확인하고, 심사위원회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9. 기타 유의사항

□ 블라인드 채용 관련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내용 등에 **개인정보(사진, 생년월일, 성별, 출신학교, 주소, 가족관계 등)**를 기재하거나 가리지 않고 제출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서류합격 예정자 증빙 제출 시에는 **성명, 생년월일, 기관(부서)명, 직위, 담당업무, 학과(전공)명은 블라인드 처리 없이 제출(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블라인드 처리)**
- 각 전형별 심사단계에서 입사지원서 내 입력한 정보만을 심사위원회에 제공하고, 심사 외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 및 증빙서류 등은 향후 지원사항 진위여부 확인만을 위해 활용되며 심사위원회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 채용 과정에서 취득하는 정보는 각 전형에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목적과 사유로 활용함
- 각종 증빙서류는 필요 시 관계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입사지원 시 유의사항

- 채용분야별 중복 접수는 불가함
- 채용공고에 명시된 접수마감 시한, 입사지원서 작성 가이드, 증빙서류 양식 등 미준수, 자격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 부적격 처리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채용청탁, 허위서류 제출, 부정행위 등의 채용비리 행위자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며, 향후 5년간 채용 응시 제한함
- 기재오류, 허위기재, 개인정보 노출, 증빙서류 누락, 연락 불가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입사지원서 **최종 제출 전 [붙임2] 입사지원서 작성 가이드, [붙임3]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 처리기준** 등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마감 시간이 임박하면 시스템 동시 접속으로 지원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지원하기 바랍니다

□ 합격결정, 취소, 입사 등에 관한 사항

- 심사위원 평균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고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제출서류 위·변조 적발, 응시자격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임용하지 않으며, 재단에서 공고한 최종 임용일자에 출근하지 못할 경우 합격은 자동 취소됨
-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 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된 자가 재직 중 퇴사할 경우 예비후보자 순서대로 3순위까지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 명부의 효력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임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방안

- 각 전형단계별 피해자에게 다음 채용 단계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피해자 특정 불가 시 해당 전형을 재실시

□ 서류 반환청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내에 이메일로 반환 청구 시(recruit@ksif.or.kr), 지원자 본인 확인 후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함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까지 채용 서류를 보관하며 이후에는 모든 서류를 파기하므로 이후에는 반환 청구가 불가함
- 온라인 제출 파일 등은 반환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이의신청

- 채용 불합격자로 전형과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5] 채용이의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서명 후 이메일로 제출(recruit@ksif.or.kr)
- 채용 전형과 무관한 단순 질의사항, 응시자·평가위원 개인정보,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이의신청이 불가함

□ 기타

- 본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채용

관련 공지사항은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함

- 채용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세종학당재단 내규에 따름
-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채용담당 이외의 내부직원이나 공무원과의 접촉 및 청탁)이 적발될 경우, 해당지원자를 사전배제하고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 채용시 자격 제한, 관련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세종학당재단은 순환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관 상황에 따라 채용분야와 다른 업무도 부여할 수 있음
- 문의사항은 채용공고 및 공지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통화량이 많아 유선문의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채용 사이트 Q&A 게시판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서상 작성하신 개인정보는 재단의 인재 채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채용 목적 달성 후 즉각 파기함
- 개인정보 및 지원서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함

[붙임1] 재단 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사람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채용구비서류가 거짓이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권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채용 결격사유 사전 자가점검표〉

점검내용		예	아니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중 하나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중 하나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4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상기 본인은 채용 결격사유 사전 자가 점검을 마쳤으며,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등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어 임용 취소(당연면직) 되더라도 만형사상 일체의 이익을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 (인/서명)

[붙임2] 입사지원서 작성 가이드

- ☐ 입사지원서 작성 시 가이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가이드에 위반되게 작성한 사항에 대해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음
- ☐ 교육사항
 - 학교교육은 직무 관련 고등교육 또는 학점은행제 과정으로 이수 완료한 과목으로 2학점(30시간) 이상 과정만 인정(이수 중인 과목 기재 불가)
 - 학교교육은 학점을 시간단위로 환산(1학점 당 15시간으로 환산)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전공명이 아닌 1개의 단일 과목만을 기재한 경우에만 인정
 - 예) 대학교에서 3학점 과목인 <○○학개론> 수강 시 교육시간 기재 방법 (인정) 45시간 45 (미인정) 3학점, 3, 3시간 등
 - 주요 미인정 사례) 경영학 900시간, 석사 과정 1600시간 등
 - 직업교육은 직업훈련기관에서 이수 완료한 직무 관련 직업교육 중 10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만 인정(이수 중인 과목 기재 불가)
 - 교육내용을 교육과정명과 동일하게 기재하거나 교육명의 일부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등 불성실하게 기재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교육사항 증빙서류에는 이수 학점 또는 이수 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확인이 불가하거나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과 다를 경우 인정하지 않음
 - 해외에서 학위 또는 경력을 취득한 자는 공증된 국문 번역본(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및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아 제출할 경우에만 인정

[붙임3]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 등 처리 기준

☐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 처리 기준

- 불성실 기재 문항은 최저점 부여

☐ 자기소개 불성실 작성 예시

- 블라인드 채용 위반

구분	예시
이름	세종학당재단 무기계약직 채용에 지원한 “김세종” 입니다.
성별	책임감 있는 “장녀” 로서..., “현역” 으로 입대하여...
출신지역	“서울” 에서 나고 자라...
나이	“30년” 간 살면서...,
가족 정보	“교직생활에 몸담은 어머니” 를 보며..., “경찰이신 아버지” 에게...
출신학교	“학당대학교” 에서 학생회장을 하며...

- 의미 없는 문자, 숫자, 문장 등 나열
- 자기소개서 문항을 자기소개서 내용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 여러 문항에 동일한 답변을 반복 기재
- 기관명 오기(경력사항에 대한 언급이 아닌 타 기관에 지원하는 자기소개서 복사 붙여넣기 등)
- 자기소개서 항목별 입력 분량의 20% 미만 입력

[붙임4]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서류합격 예정자 제출서류

- 서류합격 예정자에 한해 추후 안내에 따라 제출하며, **기한 내 미제출 또는 내용 불일치, 관계기관 진위확인 결과 허위사항 발견 시 불합격 처리됨**
- 증빙서류는 심사위원회에 제공되지 않고 진위 확인만을 위해 활용되므로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만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함(이름, 생년월일 등 나머지 사항은 마스크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

구분	제출서류	유효기간
자격사항	- 지원서에 입력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공고일 이전
교육사항	- 지원서에 입력한 학교성적증명서, 직업교육 수료증 ○ 현재 이수 중이거나, 이수학점, 이수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미인정 ○ 해외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의 경우 증빙서류 원본이나 아포스티유 대신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 담당자 이메일 주소 또는 홈페이지 URL 주소로 갈음 가능	공고일 이후
사회 형평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제출처: 세종학당재단)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국가보훈등록증	기한 없음
	- 장애인증명서 - 중증장애인의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다문화가족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 또는 본인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기본증명서(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 이전 국적 표기) ○ 부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등)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비수도권 지역인재	- 학사까지의 최종학력 기준 재학, 졸업증명서 등 ○ 가점사항은 아니나 동점자 발생 시 적용을 위해 수집 ○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범위는 [붙임 6]을 참고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붙임5] 채용 이의 신청서

〈채용 이의 신청서〉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의신청 내용					
년 월 일 성명 : (서명)					
※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바라며,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신청 사항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단순 문의 및 질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붙임6]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세부 기준

- 가.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적용한다.
- 나.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채용시험 전형단계(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별로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전 과목에 대하여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 다. 위 '나'에 따른 가점을 받아 합격한 사람(이하 '가점 합격자'라 한다)에 대한 세부적용기준은 아래와 같다.

세부적용 기준			
1. 전형단계별 가점합격자는 전형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취업지원대상자로서 가점하지 않은 점수로도 합격한 사람은 가점합격자에서 제외한다. 2.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 '1'에 따른 가점합격인원 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② 취업지원대상자만 응시하는 제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3. 최종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모집 구분(분야)에는 모든 전형단계에서 원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가점 합격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단, 응시자 수가 최종 채용 예정인원과 동일하거나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최종 채용규모	응시자 수	가점합격자	가점합격인원 상한제
3명 이하	최종채용인원 초과	전형단계별 미발생	미적용
	최종채용인원 이하	전형단계별 발생	미적용

[붙임7] 비수도권 지역인재 범위

□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정의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지방대학)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비수도권 지방 학교

가.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

-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 (2)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예시) 고려대 세종캠퍼스, 동국대 경주캠퍼스,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서 본·분교 여부 조회 가능

예시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지방대학에 해당함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
○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 지방대학에 해당하지 않음 -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 24조상의 분교가 아님

-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
- (4)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

나.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예시)

- (1)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경기·인천 지역 대학
-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 (3)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 등 「평생교육법」 상의 평생교육시설
- (4)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다.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 (1)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 (3)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